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13415
결재일자	2015.5.20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문화관광담당	문화체육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	
문종수	이명근	장순봉	도일환	05/20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		이용식 김용환 김하연		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 조례안 확정



교육문화복지국
문화체육과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

우리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하고,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 경과

■ 「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 계획

- 부구청장 방침(2015.4.20.)

■ 「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- 입법예고 기간 : 2015. 4. 22 ~ 5. 12 (20일간)
-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■ 「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 조례안 영향평가 결과

-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(권고사항 반영)
 -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성인원 하한선 규정 권고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아동영향평가 : 미해당

II 개정 내용

■ 시설 목록 추가 및 명칭·도로명 주소 현행화를 위한 별표 1·2 개정

- 성북전시관 → 성북예술창작센터, 아리랑아트홀 → 미아리예술극장
- 시설목록 추가 :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
- 시설주소를 개정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

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하한선 규정(안 제5조제2항)

현행	개정안
제5조(심의위원회) ①·③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0인</u>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(이하생략)	제5조(심의위원회) ①·③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5인 이상 10인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하며 (이하생략)

■ 시설의 위탁운영 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규정 신설(안 제6조제3항)

현행	개정안
제6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생략) <신설>	제6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III

향후 추진 일정

- 조례규식심의회 상정 2015. 5. 29
- 구의회 상정(2015년도 제1차 정례회) 2015. 6월 중
- 공포 2015. 7월 중

붙 임 :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